적극행정 운영규정

제 정 2022.09.07 개 정 2023.12.13

[ESG경영처 국민소통부 042-600-8154]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가스기술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 임·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, 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공사 경쟁력 확보와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적극행정 : 공사 임·직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2. 소극행정 : 공사 임·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대만 등 소극적 업무대도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사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3. 사전 컨설팅 :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내부 감사부서에 신청하여 업무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의견을 받는 것을 말한다.
- 4. 적극행정 면책 : 임·직원으로서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.
- 5. 적극행정 전담부서 :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적극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- 제4조(기관장의 책무) 기관장은 소속 임·직원의 소극행정을 예방,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- 제5조(전담부서의 지정) 기관장은 회사의 적극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지정·운영하고, 전담 부서장을 적극행정책임관(이하 "책임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한다. 단, 내부 감사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사전 협의를 거쳐 운영하여야 한다.
- 제6조(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)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, 시행하도록 한다.
 - 1.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- 2. 적극행정 우수 임·직원(부서)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
 - 3. 적극행정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
 - 4.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
 - 5. 소극행정 예방 및 점검에 관한 사항

- 6.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
- 제7조(교육) 기관장은 소속 임·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해야 하며, 다음 각호의 교육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.
 - 1. 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
 - 2.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
 - 3. 이러닝(자체개발, 타기관 및 정부 교육프로그램 포함)
- 제8조(사규의 정비) ① 기관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사규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적극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.
 - ② 기관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규를 해석할 때는 사규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사규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.
- 제9조(적극행정 법제 지원) 법무담당 부서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규의 입안, 정비 및 해석 등에 관하여 자문이나 상담,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.
- 제10조(이해충돌방지)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비롯한 직무관련자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을 인지한 경우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의 정의, 신고 및 회피신청 절차는 「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」에 의한다.

제 2 장 적극행정 지원위원회

- 제11조(위원회의 설치)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다.
- 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이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.
 - ② 위원장은 공사 경영전략본부장으로 한다.
 - ③ 내부위원은 책임관 및 인사담당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외부위원은 시민참여혁신단 또는 공사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관장이 위촉한다.
 - ④ 적극행정 전담부서 부장을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.
 -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준비, 배부,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
 - 2.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, 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
- 제13조(위원의 임기)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- ② 내부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 -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, 선임자, 연장자

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4조(위원회의 권한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- 1.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적극행정 우수 임·직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
- 3. 적극행정 임·직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
- 4.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공사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부 감사부서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
- 5.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 등이 없거나 모호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사항으로 본사 각 부서 및 지사에서 요청한 사항
- 6. 국민, 기업이 공사에 제기한 사항으로 국민 권라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규정의 규제개선 여부
- 7. 임·직원 및 국민, 기업의 요청에 따른 소극행정 부합 여부 결정
- 8. 그 밖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변경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
제15조(소집 및 통지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,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- 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- 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- 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- ②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부서는 [별지 제1호 서식]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예정 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.
-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일시, 장소와 목적이 명시된 [별지 제2호 서식]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소집통지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한다.
-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위촉 시 보안서약서[별지 제3호 서식]를 제출받아야 한다. 「보안업무규정」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,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외부 위원에게 제공 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.
- ⑤ 위원장은 회의 참석에 앞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[별지 제4호 서식]와 직무윤리 서약서[별지 제5호 서식]를 받아야 하며, 위원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해를 위해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제1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 의결에서 제척된다.

- 1.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심의내용과 관계가 있는 경우
- 2. 위원과「민법」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가 심의내용과 관계가 있는 경우
- 3. 당해 심의내용과 관련하여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용역, 자문,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
- 4. 당해 심의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
- 5.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의내용과 관련된 업체에 재직한 경우
- 6.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
- ②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관계 임·직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

- 있는 경우 간사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, 간사는 그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, 간사는 그 결과를 기피 대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기피 통보를 받은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⑤ 위원이 스스로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- 제17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4.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 - 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제18조(의원회 출석 및 자문) ①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임·직원, 전문가 및 규제 개선 건의자 등이해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있다.
 - ② 위원회는 심의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 내부 부서 및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- 제19조(안건의 사전검토) 간사는 안건의 사전검토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 - 1.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 해소 또는 소극 행정·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- 2. 안건 제안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
 - 3.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
 - 4. 안건 관련 수사, 소송,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경우
- 제20조(심의·의결)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23.12.13>
- 제21조(의사록의 작성) 간사는 [별지 제6호 서식]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심의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 - 1. 회의일시·장소 및 안건
 - 2.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
 - 3. 심의대상, 발언요지, 심의결과
 - 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제22조(통지의무) 위원회는 의결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간사는 의결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계부서에 [별지 제7호 서식]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위원 등의 보수)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,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·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24조(운영기준의 준용)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정하는 각종 위원회

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한다.

제 3 장 적극행정 우수 임·직원 선발 및 포상

- 제25조(적극행정 우수 임·직원 선발 등) ① 위원장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·직원을 적극행정 우수 임·직원으로 선발한다.
 - 1.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임·직원
 - 2. 창의적, 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임·직원
 - 3.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임·직원에게 모범이 되는 임·직원
 - ② 적극행정 우수 임·직원 선정 절차 및 방법,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.
- 제26조(우대 조치 등) ① 위원장은 제25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 암직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, 선발된 암직원의 희망,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를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.
 - 1. 승진 심사 시 가점 부여
 - 2. 포상 및 장려금 가산 지급
 - 3. 교육훈련 등 우선 선발
 - 4. 기타 인사상 우대
 -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은 적극행정 포상계획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한다.

제 4 장 적극행정 임·직원 보호 및 지원

- 제27조(장계요구 등 면책) ① 임·직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「감사원법」 제34조의3 및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2, 「감사업무규정」 제26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.
 - ② 임·직원이 내부 감사부서의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. 다만, 임·직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내부 감사부서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구체적인 기준, 운영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 감사부서에서 운영 중인 「적극업무수행 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」에 따른다.
- 제28조(징계 등 감경) ① 임·직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.
- ② 징계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임·직원이 적극행정(업무)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 징계인사위원회에서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, 그 결과를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- 제29조(적극행정 임·직원 지원) ① 기관장은 정계의결 등 요구를 받은 임·직원이 소명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② 기관장은 소속 임·직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·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,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기관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임·직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

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.

-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 및 배상규정에 따른다.
- 제30조(지원 신청)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임·직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지원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[별지 제8호 서식]에 따른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
 - 2. 수사개시 통보, 출석통지서, 소장 사본,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
 - 3. 임·직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
 - 4.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
 - 5. 기타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- 제31조(지원의 취소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송 등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
 - 1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 등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
 - 2. 적극행정 임직원이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
 - 3.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 · 의결하는 경우
- 제32조(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) ① 제31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임·직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
 - ② 적극행정 임·직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초과한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.
 - ③ 기관장은 적극행정 임·직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임·직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.
- 제33조(퇴직 임·직원에 대한 적용) ① 제31조, 제32조의 규정은 적극행정 임·직원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 - ② 지원금 환수시 퇴직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나 퇴직금 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 되지 않도록 퇴직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이나 퇴직금 등과 환수해야 할 지원금을 상계처리한다. 단, 당해 퇴직자가 상계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.
 - ③ 전담부서는 퇴직자의 지원금 환수를 위하여 내용 증명 2회 발송 등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 단, 연락 두절 및 사망시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.

제 5 장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

제34조(소극행정의 유형) 소극행정은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이나 전문성·창의성이 결여된 업무태도로 인해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사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는 행위로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적극 행정과 소극행정을 구분하는 예시는 [별표1]과 같다.

- 1. 적당편의 : 문제해결 노력 없이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경우
- 2. 업무해태 :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
- 3. 탁상행정 :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
- 4. 기관중심행정 : 자의적 판단 및 직무권하을 이용하여 국민 편익이 아닌 본인 편의를 중시하는 경우
- 제35조(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) ① 기관장은 소속 암직원의 소극행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, 소속 임·직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
 - ② 기관장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극행정에 대해서 징계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사항) 이 규정 시행 전에 징계의결이 완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구분

분 류	내 용
	〈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〉
	① 통상적 수준 이상의 노력 또는 고도의 전문성(창의성)을 발휘하여 고난이도 업무를 처리하고 성과가 뛰어난 경우
	② 통상적 수준 이상의 노력 또는 고도의 전문성(창의성)을 발휘하여 일반 난이도 업무 다수의 건을 처리하고 성과가 뛰어난 경우
	③ 업무 관행을 벗어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, 그에 따른 성과가 뛰어난 경우
적극행정	〈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목표했던 성과는 달성하지 못한 경우〉
	① 통상적 수준 이상의 노력을 투입하거나 고도의 전문성(창의성)을 발휘하여 고난이도 업무를 처리했으나 과정상 절차 미준수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② 통상적 수준 이상의 노력을 투입하거나 고도의 전문성(창의성)을 발휘하여
	일반 난이도의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 미준수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
	③ 업무 관행을 벗어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당초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
	〈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〉
	① 적당편의 - 규정, 중요정보, 지식, 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타협·절충으로 대충 처리하는 행태 - 기타 사후조치나 소관·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② 업무해태
소극행정	-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, 관라감독 소흘, 늑장 대응 등의 행태 -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,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 ③ 탁상행정
	- 개정 법량지침이 아닌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하는 행태 ④ 기관중심행정
	- 법·제도의 자의적 해석 및 업무처리로 사익추구, 업무처리 비용의 전가 등 권위적인 자세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 행태
그 외	〈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았으나 일상적 업무 처리를 통해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〉
	① 일반 난이도의 업무를 통상적인 노력을 통해 처리하고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② 주기적,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③ 일상적 업무를 업무 관행에 따라 처리하고 성과를 달성한 경우

【별지 제1호 서식】 (제15조 제2항 관련)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	20 년 월 일
년 월 일	(제 회)

의 결 사 항

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안건명

제 안 자	
제 안 년 월 일	20 년 월 일

1. 제안사유

2. 의결주문

'00년도 제0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소집(안)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

가. 일 시 :

나. 장소:

다. 회의 목적사항

<의결사항 >

-

라. 기타사항

3. 참고사항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소집통지서

귀하

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00차 적극행 정 지원위원회를 소집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. 일 시:
- 2. 장 소:
- 3. 심의안건 :
- 4. 내 용 : 별 첨

20 년 월 일

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장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보 안 서 약 서

본인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참석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하겠습니다.

- 1. 본인은 한국가스기술공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참석함에 있어 주관 부서의 보안 관련 지시사항 등의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,
- 2.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참석하는 기간 중은 물론, 그 이후에도 한국가스 기술공사의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한 처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.

년 월 일

소 속:

성 명 : (인)

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

【별지 제4호 서식】

직무윤리 사전진단서

위 원 명 : (인)

연번	진 단 내 용	체크	사항
1	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.	예 ()	아니오 ()
2	위원회의 심의·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	예	아니오
	보유하고 있다.	()	()
3	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·허가·면허·특허 등	예	아니오
	의 당사자이다.	()	()
4	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·용역·계약 또는 연구·논문	예	아니오
	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.	()	()
5	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·소송	예	아니오
	등을 진행 중이다.	()	()
6	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, 단체,	예	아니오
	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.	()	()
7	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·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·의무	예	아니오
	관계 변동,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.	()	()

^{* &#}x27;예' 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직무윤리 서약서

직위: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

성명: (인)

상기 본인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.

- 1.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
- 2.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
- 3.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 · 공사 · 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
- 4.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 · 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
- 5.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
- 6.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,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
- 7.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
- 8.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ㆍ향응ㆍ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ㆍ알선행위 금지
- 9.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

년 월 일

(서명)

【별지 제6호 서식】

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 개요

회의일시	2	0 년	월	일	00:00 ~ 00:00	
회의장소						
참석위원	명					
불참위원	명					
간 사						

2. 안건 처리결과

□ 심의결과

의안번호	안 건 명	심의결과
제 호	0	원안의결, 수정의결, 조건부의결, 부결, 심의유보

□ 심의결과(요지)

3. 회의내용

【별지 제7호 서식】

제 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결서

일	시		
위 원	장	출 석 위 원	
제 출	자	간 사	

년도 제 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제안 설명으로 심의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.

	ગો.		부	의 사 항		হী ০	겨 되
소 관		번호		건 명	회 의 결 과		
	직	위	위 원 장	위 원	위 원	위 원	위 원
의	성	명					
	날						
	(서	명)					
	직	위	위 원	위 원	위 원	위 원	위 원
	성	명					
자	날						
	(서	명)					
	의 결 일 자				의 결 장 소		비고

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

신 청	담 당 자	소속 :	직 급:	성	명 :	
(경 인	담당업무					
신	청 내 용	□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(요청 금액:) □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□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				
		고소	· 고발 등	민사상 책	임과 관련된 소송	
사	건 번 호	접수일	관할 및 사건번호	접수일	관할 및 사건번호	
사	건 개 요					
_ _	구비서류	□ 수사개시통보, 출석통지서, 소장사본,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□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□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□ 그 밖의 서류				
	 신청인 ○		 용이 모두 사실임을	- 확인하며, 신 ²	청내용이 허위에 의	
한	것이거나	지원을 받은 C) 기후라도 요건이 미터	비한 점이 밝혀	진 경우, 지원 목적	
에	위반하여	지원금 등을 /	사용한 경우 또는 ^c	이 규정에서 정	한 제반 준수사항을	
 정	당한 사유입	것이 이행하지 않	는 경우에는 지원의	취소.환수 및 기년	타 불이익 처분을 감	
수	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.					
	년 월 일					
	신청인 : ○○○ (인)					
	한 국 가 스 기 술 공 사 장 귀하					